#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김원이・남인순・서미화

박지원 • 박민규 • 박상혁

서삼석 • 신정훈 • 허 영

김병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을 추진하여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의대정원을 전년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 발표하였음.

그러나 의대정원 증원만으로는 붕괴직전의 지방의료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로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그침.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 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할 정도로 지역간 의료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음.

전남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41%가 분포하여 도심과 접근성이 떨어져 대형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움.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25%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지역산업단지 노동자 등의 의료서비스 수

요가 많으나 대학병원이 없어 중증 및 응급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립목포대학교는 지난 1990년부터 교육부에 의대신설을 꾸준히 요청하였음. 목포대와 목포시민은 지난 34년간 의대신설 운동에 헌신하며 목포대 의대 유치를 추진해왔음.

지난 2019년 교육부가 시행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B/C) 1.70,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으로 인한 생산유발효과 2조 4천여억원 등 경제성을 입증하였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어느 대학에 할지 전남도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알려주면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전남권 의대신설의 의지를 밝힌 바 있음.

이에,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지역완결적 의사인력 양성시스템을 갖추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 고자 함. 또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역공공의료과정 전형을 별도로 마련해 의사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목포시 및 전남지역 공공 보건의료기관 등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전남 목포시에 위치한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함(안 제 2조).
- 나.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은 100명 내외로 교육부장관

- 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안 제3조).
- 다. 국가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 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마.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함(안 제9조).

##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여 의료 인 프라 취약지인 전남지역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료인을 양성하고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 제2조(설치)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9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국립목포대학교(이하 "국립목포대학교"라 한다)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 제3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내외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의 수여와 그 밖에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예산지원 등) ① 국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의 시설·설비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한다.

- ② 국가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는 산업보건·첨단 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과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에 드는 비 용을 보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비용 보조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공공의료과정) ① 국립목포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의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공공의료 관련 과목,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하는 지역공공의료과정(이하 "지역공공의료과정"이라 한다)의 학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 ② 지역공공의료과정의 선발 방법과 교육과정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제7조(학비등의 지원) 국가는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제8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7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휴학, 성적기준의 미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7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

- (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 1. 퇴학한 사람
- 2.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9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무복무) ① 제7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보건업무에 10년 동안 복무(이하"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 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이하 이 조에서 "전문의수련"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수련을 받거나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전문의수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의수련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제10조(의사 면허의 취소 요청 등) 교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 면허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제11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의사의 의무복 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의 장은 해당 의사의 근무실적을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전라 남도지사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의무복무 대상인 의사는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가 이루 어지고 있는 기관의 장을 거쳐 전라남도지사 및 교육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제12조(의무복무 의사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

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무복무 중인 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전라남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우선 채용하거나 의무복무가 이루어진 기관에 우선 채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